

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
(의안번호 제11호 2000. 4. 21)

의회운영위원회  
2000. 4. 27

1. 심사경과

- 가. 2000. 4. 21 최정경의원의 4인 발의
- 나. 2000. 4. 21 의회운영위원회 회부
- 다. 2000. 4. 27 제4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 요지(서면)

- 가. 제안이유  
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개정함.
- 나. 주요골자  
정기회를 1차 정례회로 용어를 개정함(안 제2조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국연)

-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“정기회”의 명칭을 “1차 정례회”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, 형식·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: 없음